안전한 性의 실천은 감염인, 비감염인 모두의 과제

지난 1월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한 HIV 감염인 남성이 00도에서 유흥업소 생활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다. 레드리본에서는 감염인에 대한 감시나 법적인 처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글 | 유 은 주 · 본회 교육연수 과장

언론 일부에서는 이 남성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고 기술하기도 했고, 일부는 '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HIV 감염인의 성행태에 대해 언론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것이 '경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하 예방법)에는 HIV 감염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 예방조치(콘돔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전파를 방지하는 것: 시행령 23조) 없이 행하는 성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법 제19조, 제25조: 3년 이하의 징역)이 있다.

지난 수년간 HIV 감염인의 성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호소하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감염인에 대한 관리를 놓고 관계기관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혹자는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 같은 감염인을 감시하기 위해 체내에 '전자 칩'을 장착하자는 극단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 속에는 감염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차별과 편견의 높은 벽은 담겨지지 않았다. 평소 감염인들이 보건소 담당자를 통해서 제공받는 상담과 보건교육의 질도 문제 삼지 않았다. 다만 감염인의 '악의에 찬' 의도에 대해서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을 뿐이다.

감염인에 대한 감시 · 관리만으로 에이즈 전파를 막을 수 없다

작년 12월말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HIV 감염인 구는 약 3,800여명 이라고 한다. 하지만 UNAIDS에서는 우리나라의 HIV 감염인구를 10,000명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중적이고 상업적인 성문화가 팽배한 반면에 에이즈 검사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꿈에도 자신이 에이즈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이를 반영하듯 에이즈 검사를 받아본 성인들도 전체의 20% 미만이다. 드러난 감염인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누군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된 결과이다. 단지 에이즈원인바이러스(HIV)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하나만으로 사회로부터 낙인과 차별을 받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다면, 그 사람의 내면에 좌절과 분노가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감염인들은 누구나 이러한 충격과 고통의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하지만 필자

가만난 대다수의 감염인들은 자신과 동료 감염인의 어려운 처지에 공감하고, 자신 때문에 타인이 감염되는 것을 걱정하고 주의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중 일부가 자신이 겪는 차별과 고립에 분노하면서 복수심에 불타 타인에게 전파하는 행동을 시도했다고 가정해 보자. 미확인 감염인의 감염행태는 전혀 건드리지 못한 채, 드러난 감염인에게 '실현 불가능한' 감시의 강도를 강화하자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까?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과 예방이 상식이 되는 사회

에이즈에 대해 정확히 안다면 별다른 두려움 없이 필요할 때 검사를 받아볼 것이며, 따라서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시간을 보내다가(그 사이에 누군가에게 전파를 했을 수도 있다)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난 이후에 병명을 알게 되는 불행도 줄어들 것이다.

이제는 '자신이 감염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에이즈를 전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감염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은' 사람들의 태도 변화도 필요하다.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 된다면, 누구나 예방을 실천하는 것도 상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필요할 경우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콘돔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어떤 감염인이 타인에게 감염 가능한 성접촉을 시도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상대방이 콘돔을 사용하자고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감염인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염여부를 알 수 없는 타인'과의 성접촉시 콘돔 사용이 필수라는 정보도 널리 알려져야 한다. 감염인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해 볼 때, 만약 상대방 역시 HIV 감염인이라면 예방조치 없는 성관계를 통해 재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종류의 HIV가 체내에 있다면, 이 바이러스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체의 면역능력을 저하시켜 한 종류에 감염되었을 때보다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게다가 상대방이 감염인이 아닐지라도 그 밖의 성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을 통해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감염인들도 타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성관계를 할 때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에이즈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안전한 성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1) 하지만 이 조항으로 감염인을 처벌하기위해서는 누군가가 그/그녀의 감염여부를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성생활을 예의 주시하고 있어야만 한다. 특히나 성관계에서 콘돔사용 여부도 알고 있어야 한다. 말 그대로 현상을 덮쳐서 확인하거나, 파트너의 고발, 어떤 경로를 통했거나 제3자에 의한 신고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조항이다. 법 집행의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감염인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볼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2) 지난 2002년 여수 0모씨 사건을 기억해 보자. 당시 그녀는 자신이 HIV에 감염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콘돔 사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다고 진술했다.